제 202001265 호

형 식 승 인 서

신청인 성 명 : 이상환

상 호 : (주)미래디앤에스

사업장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83, 나동 (목행동)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· 제10항 및 제37조제1항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 ·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합니다.

1. 품 명 완강기지지대

2. 형 식 바닥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

3. 형식승인번호 지지20-6

4. 조 건

5. 비 고

2020 년 11 월 18 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
원본대조필

검 사 성 적 서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: 031-289-2999, Fax: 031-287-9066	성적서 번호 : 202001265 페이지 : (1)/(총 2)

1. 신 청 인 ☑ 원 본 ☐ 재발급
   - ○ 업체명 : (주)미래디앤에스
   - ○ 주 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83, 나동 (목행동)
   - ○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2000485호 2020. 10. 07.
2. 검사성적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3. 검사대상 종별(품명) : 완강기지지대
4. 검사기간 : 2020. 10. 07. ~ 2020. 11. 18.
5. 검사방법 :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6. 검사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7. 검사환경
   - ○ 온 도 : (13.4 ± 5.0) °C, 습 도 : (42 ± 7)% R.H.
8. 검사결과 : 합격
   - ※첨부 : 세부 형식시험 결과(2 페이지 참조)

확 인	실 무 자	기술책임자
	성 명 : 추 광 래 (서명)	성 명 : 정 환 필 (서명)

위 성적서는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.

2020년 11월 18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(인)

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
원본대조필 (인)

KFI Korea Fire Institute

[첨부]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: 031-289-2999, Fax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001265

형 식 시 험 결 과

업체명	(주)미래디앤에스	형식승인번호	지지20-6
품 명	완강기지지대	형 식	바닥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

시험항목			결과			비고
조 항	항 목	기 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정	
제16조	지지대의 구조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	5	적 합	합격	
제17조	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	최대사용하중이 1 500 N 이상의 하중인지 여부	5	적 합	합격	
		최대사용자수(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함)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(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함)으로 함	2	적 합	합격	
제18조	재료	지지대는 금속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비내식성 재료일 경우 내식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벽부착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(KS D 3698)를 사용하는지 여부	1	적 합	합격	
		지지대 내식가공의 확인은 염수분무시험방법(중성,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(KS D 9502))에 의하여 5회(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,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) 시험하는 경우 부식생성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여부	1	적 합		
제19조	강도시험	지지대는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에 5 000 N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는지 여부	2	적 합	합격	
제20조	충격시험	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,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.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여부	2	적 합	합격	
제21조	표시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	5	적 합	합격	

"끝"

원본대조필 ㊞